

## [주]리치먼드자산운용 정보기술(IT)부문 공시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「금융회사 정보기술[IT]부문 보호업무 모범 기준」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
**1. 공시 사유 :**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인력비율 미충족 및 모범 기준상의 금융ISAC 연계시기 미충족

**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**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총임직원수의 5% 이상 (1명)	정보기술부문인력의 5%이상 (1명)	정보기술부문예산의 7%이상 (5.8백만원)

**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2013.3.31 현재기준)**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<b>충족</b>	<b>미충족</b>	<b>충족</b>
5%(1명)	0%(0명)	8%(5.8백만원)

**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(정보보호인력비율)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:**

(주)리치먼드자산운용은 대고객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며, 총임직원수가 적어 정보기술부문인력이 정보보호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.

**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**

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, 정보보호부문 인력비율 미충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6. 금융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**

당사는 현재 금융ISAC와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, 차후 관계법령 또는 감독 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금융ISAC와 연계할 예정입니다.

본 공시 화면은 2013년 05월 15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[주요 경영상황 공시] 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13. 04. 30.

(주)리치먼드자산운용 대표이사 길 진 용

